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8. 13 선고 2021가단24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1,107㎡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84. 6. 14. 접수 제4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 근거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노승욱

별지

청구원인

1. 당사자의 지위

원고는 충북 영동군 C 전 1,10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)에 대하여, 원인 2004. 11. 2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,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4. 12. 30. 접수 제14760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서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인 1984. 6. 12. 설정계약, 채권최고액 금 삼백오십만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피고,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84. 6. 14. 접수 제49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.

2.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청구

원고는 채무자 땅 D의 자로서,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, 경작하고 있는데, 위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1984. 6. 12. 설정계약되어, 1984. 6. 14. 접수 제49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, 이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,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

이 위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등기결사의 이행을 구하며 본 소에 이르게
된 것입니다.

